

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·선발 및 관리 시행 계획(안)

1 사업목적

- ☐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지역 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.
- ☐ 입주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.
- ☐ 공정한 선발과 입주관리로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 도모.

2 시설개요

- ☐ (시설명) :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
- ☐ (소재지)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16 (DMMC 2층) 운영사무실
- ☐ (입주기업 공간 구성) : 총 12실

구분		공간 수
독립형	2인실(8~12㎡)	9
	2인실(13~14㎡)	2
	4인실(18.58㎡)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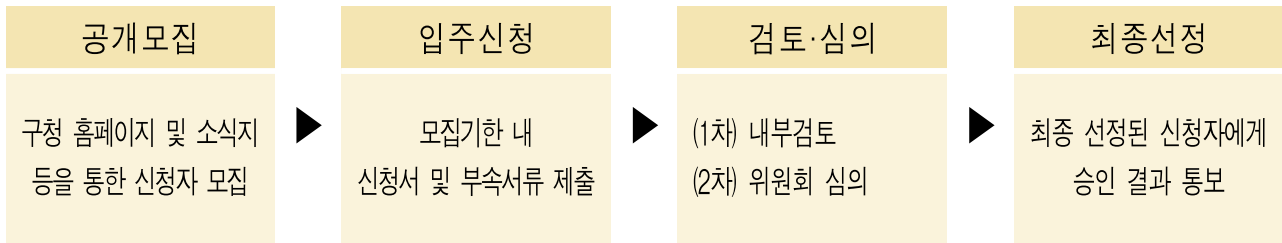
3 모집개요

- ☐ (모집대상) : 19~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
- ☐ (우대사항) : 구로구 주민 및 구로구 소재 기업, 장애인, 여성기업 가산점 부여
- ☐ (지원내용) : 창업공간 지원,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킹, 멘토링, 투자

보육사업	교육사업	네트워킹	멘토링	투자	상담
입주공간 임대	전문, 일반 창업교육	데모데이 수료식	선·후배 창업자 1:1 멘토링	투자사, 정부 투자연계	창업일반상담

- ☐ (입주기간) : 2026. 12. 1.(화) ~ 2027. 12. 31.(금) (13개월)

□ (입주절차)



【 예비 입주자 선정 】

- 입주예정자의 입주 계약체결의 지연, 입주 시기의 연기, 입주 계약의 포기, 기 입주자의 조기 졸업,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
- 예비입주자는 입주 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선정 결정일자(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)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
-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

□ (입주일) : '26. 12. 1(화) (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

4

세부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공간	예비·초기 창업자 등에게 사무실, 회의실 등 공간임대
교육	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지원
멘토링	전문가 매칭에 의한 경영 및 기술 자문
투자	유망기업투자 및 후속 투자 연계 지원

□ (사무공간 지원)

- 창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회의실, 강의실 신청서 작성 후 무료로 대여

□ (프로그램 지원) : 멘토링, 네트워킹, 투자유치 등

- 1) 멘토링 :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, 기술개발, 투자, 마케팅, 홍보 등에 대한개별·집단 코칭 지원
- 2) 네트워킹 : (예비)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
- 3) 투자 : 투자유치 교육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

□ (신청대상)

-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
-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우대항
 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창업자
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여성 창업자
 - 4차산업 분야 창업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 -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구로구 주민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구로구 소재 기업

□ (제외대상)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받고 있는 자
- 휴·폐업 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【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】 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)

1. 일반유흥주점업
 2. 무도유흥주점업
 3. 카지노 운영업
 4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5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-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6

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
□ (모집기간) : 2026. 9. 16.(수) ~ 2026. 10. 13.(화)

□ (신청방법) : 이메일 접수 (dkqktmdals@dongyang.ac.kr)

○ 제출서류

구비서류	비고
① 입주 신청서	별도 첨부 양식
② 사업계획서	별도 첨부 양식
③ 신분증	별도 첨부 양식
④ 사업자등록증명원	별도 첨부 양식
⑤ 신분증	별도 첨부 양식
⑥ 관련 증빙서류	별도 첨부 양식
⑦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	별도 첨부 양식

7

평가방법 및 절차

□ (선정절차) 선정 단계는 ①서면평가, ②PT 발표평가, ③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, 발표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

□ (1차평가)

< 1차 서류평가 세부평가별 최소 득점기준 >

1차 서류평가 : 2026. 10. 21.(수) / (심사위원 : 3명(구로구청 당연직 1명, 외부전문가 2명))

평가항목	세부 평가 항목	배점	최소 득점기준
1. 문제인식	1-1. 제품·서비스의 개발동기 1-2. 제품·서비스의 목적(필요성)	20	12
2. 실현 가능성	2-1. 제품·서비스의 개발방안 2-2.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	30	18
3. 성장전략	3-1.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-2.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	30	18
4. 팀구성	4-1. 대표자·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-2.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	20	12
소계			
가점(최대 3점)	장애인, 여성기업, 구로구 주민, 구로구 소재기업	3	
최종 점수		103	60

□ (2차평가)

< 2차 발표평가 세부평가별 최소 득점기준 >

2차 발표평가 : 2026. 11. 18.(수) / (심사위원 : 3명(구로구청 당연직 1명, 외부전문가 2명))

세부평가	평가내용	배점	최소 득점기준
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(30점)	■ 사업추진 의지, 열정, 책임감, 발전가능성(10점)	10점	18점
	■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(10점)	10점	
	■ 전문성(동업종 경력 등) 및 창업준비정도(10점)	10점	
소 계		30점	
창업 아이디어 (30점)	■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(20점)	20점	18점
	■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(10점)	10점	
소 계		30점	
사업화가능성 (40점)	■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점)	10점	24점
	■ 수익창출 가능성(수익모델 적합성 등)(20점)	20점	
	■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(10점)	10점	
소 계		40점	
합 계		100점	60점

□ (운영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)

- 1) 내용 : 2차 발표평가 결과 및 예비후보자, 이의신청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개최
- 2) 위원 : 총 3명, 구로구청 당연직 1명, 외부전문가 2명
- 3) 일정 : 2차 발표 평가 후 개최 예정
- 4) 방식 : 서면 검토 회의 진행, 필요시 대면 회의 진행

8

유의사항

-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사전연락 필수
- 예비창업자(팀)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☐ 기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장 주소지를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실로 변경하여야 함

* 기한 내 사무실 주소 변경 불이행 시 퇴거 조치 가능

** 주소: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16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

☐ 후보기업 선정 대상자의 후보자격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,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

☐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

☐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
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, 부적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-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
-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
- 휴·폐업한 경우
-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-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
-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-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
-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(음주, 기물파손, 소음공해 발생 등)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 등
-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(매출실적 등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

9

문의처

☐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백승민 매니저[☎ 02-2625-9552]